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신자 전 회원사

(참조)

제 목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관련 정기검사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50(2020.5.26.)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 차량이 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20.1.1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상태의 불량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를 실시('20.2.28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에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 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 불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

협조자

시행 서전버조 20- 150호 (2020.06.01) 접수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교통회관 11층)

전화 02-422-0019

전송 02-418-0071

/

()

/ <http://www.tourbus.or.kr>

/ 공개

"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